

평창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5
----------	----

제출년월일 : 2014. . .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우리지역에서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2. 주요내용

- 가. 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창군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를 설치함(안 제3조)
- 나.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평창군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함(안 제6조)
- 다. 예비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사회적기업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관계 규정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 받을 수 있도록 지원 함(안 제7조)
- 라. 사회적기업 등의 자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질 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10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별첨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 라. 기 타 :
 - (1)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없음 (제정조례안)
 - (2) 입법예고('14. 7. 22. ~ 8. 12.)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평창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한 사회적기업 육성 등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기업을 말한다.
2.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제1호의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지 않았으나 사회 서비스의 제공, 취약계층에 일자리제공 등 사회적 기업으로의 실체를 갖추고 장차 사회적 기업으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기업을 말한다.
3. "취약계층"이란 법 제2조제2호 및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의하는 계층을 말한다.
4. "사회서비스"란 법 제2조제3호 및 영 제3조에서 정의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5. "연계기업"이란 법 제2조제4호에서 정의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3조(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설치·구성) ① 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이하 "사회적기업 등"이라 한다)의 설립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창군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부군수, 경제체육과장

2. 위촉직 위원 : 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대학교수 등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해촉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적기업 등 육성·지원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기업 등 발굴 및 육성 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기업 등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요청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위원은 위원회의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적기업 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 ⑥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등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장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스스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④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6조(사회적 기업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평창군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을 위한 방향
2. 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특화사업의 중점 육성에 관한 사항
5. 사회적기업 등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 및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6. 재정 확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사회적 기업 등의 육성·지원에 필요한 시책에 관한 사항

제7조(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육성) ① 군수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한 예비사회적
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예비사회적기업을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예비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사회적기업 전환을 촉진하기 위
하여 관계 규정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 받을 수 있도록 지원
할 수 있다.

제8조(시설비 등 지원) ① 군수는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 구입비·시설비 등을 지원·융자 하거나 국유·공유재산
및 물품을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불용물품 등을 관계규정에 따라 사회적 기업 등에 무상 양여
할 수 있다.

제9조(경영지원 등) ① 군수는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
· 법률·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업무를 군 출연기관이나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거나 전문적 기술·지식을 제공
하는 자에 대하여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재정지원 등) ① 군수는 사회적기업 등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정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에서 사업계획서를 심사하여 결정 한다.

③ 제2항에 대한 신청은 다음 내용의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업의 명칭, 대표자성명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2. 사업의 목적 및 세부사업 계획
3. 사업기간 및 사업비 산출 내역
4. 지원사업의 범위 및 외부로부터 지원계획
5. 수익배분 및 재투자에 관한 사항
6. 임·직원 구성 (유·무급 포함)에 관한 사항
7. 사업의 기대 효과 등

④ 제2항에 따라 지원계획이 결정된 이후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국가 또는 기관·단체 등으로부터 신규 또는 추가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에도 보조금을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교부방법) 보조금 지급은 사업의 효율과 목적달성을 위하여 일시 또는 분할하여 지원한다. 단, 사회적기업 등과 사업위탁 표준협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표준협약서 내용에 준한다.

제12조(목적 외 사용 금지) ①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 기업 등은 사업계획 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반하여 사업계획 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하며, 3년간 사회적기업

등 선정에서 제외한다.

제13조(보고 및 검사) ① 재정지원을 교부받은 사회적 기업 등은 「평창군 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관련법령에 따라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에 대하여 정기·수시로 검사하도록 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우선구매 촉진) ① 군수는 사회적기업 등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회적 기업 등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판로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조세 감면) 군수는 사회적기업 등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6조(민간위탁 참여 장려) 군수는 군 사무의 민간위탁 시 사회적기업의 참여를 우선 장려할 수 있다.

제17조(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충) 군수는 지역 내 민간기업·단체 등이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및 육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 내 민간기업·단체 간 교류·협력 네트워크의 구축·운영 지원
2. 연계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참여기업 지원 확대
3. 참여기업 장려를 위한 사기진작

제18조(홍보 등) 군수는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 내 모범 모델의 발굴 및 확산 지원
 2. 지역 내 사회적기업 등의 제품·서비스의 품질 제고 및 홍보 지원
 3. 전문가 포럼, 워크숍개최 등을 통한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 확산
-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용 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평창군 사회적기업 육성에 따른 예산지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평창군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평창군 사회적기업 육성에 필요한 예산으로 권고적 형식이며 미래의 수요예상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으로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 추계서 제외 대상임

4.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연락처	(033) 330-2540

관 계 법 령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3조(운영주체별 역할 및 책무) ① 국가는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대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